

 **리카온 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RECAON SURVEYORS & CLAIM ADJUSTERS CO., LTD.

(우)140-820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19-40 남영빌딩 5층

본사 : TEL. 02-757-9551

영남지사 : TEL. 051-892-9551

FAX. 02-757-9563

FAX. 051-892-9525

Report No. : 2013-00416-01

Date : 2013년 04월 30일

수 신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참 조 : 일반손해사정파트 [최 학 기 책임님]

제 목 :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성동구청" 손해사정서

귀사의 요청에 의거 2013년 03월 0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265-20번지 인근에서 발생한 피보험자 '성동구청 증권번호 : 81290019140002' (사고번호 : 20130308-12182-01) 영조물배상책임 사고의 손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종 손해사정사 : 이 재 화 (인)

책임조사자 : 구 민 남 (인)

(M.P. 011-356-7285)

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대 표 이 사 임 철 상

1. 총괄표

- 가. 보 험 종 목 :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 나. 증 권 번 호 : 81290019119854
- 다. 보 험 계 약 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라. 피 보 험 자 : 성동구청
- 마.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내
- 바. 보 험 기 간 : 2013. 01. 01 ~ 2014. 01. 01 -1년간-
- 사. 질 권 사 항 : 없 음
- 아. 사 고 일 시 : 2013년 03월 06일 01:20분 경
- 자. 사 고 장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265-20번지 인근
- 차. 사 고 원 인 : 도로 시설물의 보존상 결함 / 피해차량 운전자 운전 부주의(면책)
- 카. 사 용 약 관 :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도로배상책임특별약관

(단위 : 원)

목 적 물	보상한도액	추 정 손 해 액	자기부담금	추정지급보험금
벤츠S600 / 35마1481	50,000,000	50,000,000 (113,700,000)	100,000	면 책

※ 총괄표란에 회사의 직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인)

2. 보험계약내용

항 목	계 약 사 항	계약사항 검토	비 고
보험종목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일 치	-
증권번호	81290019140002	일 치	-
사고번호	20130308-12182-01	-	-
계 약 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일 치	-
피보험자	성동구청	일 치	-
보험기간	2013. 01. 01 ~ 2014. 01. 01	-	2013.03.06 사고
보상한도액	₩ 50,000,000.-	일 치	-
공제금액	₩ 100,000	일 치	-
특별약관	도로배상책임 특별약관 外	-	-
사업내용 (업 종)	서비스 - 공공시설물 운영 外	일 치	-
배서 및 질권사항	없 음	-	-
과거 사고사항	있 음	-	-
다른 보험계약사항	없 음	-	-
담보내용	영조물배상책임손해 담보	일 치	대물

3. 일 반 사 항

1) 사고 도로구간 개요	
시 설 명	성동구 하수도 맨홀 및 빗물받이
소 유 자	성동구청
구 간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내 일원
사고지점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265-20번지 인근
관리책임자	성동구청 치수방재과

2) 대물배상 피해자 일반사항	
등록번호	35마1481
차 종	벤츠 S600 [2006년 06월 20일 최초등록]
소 유 자	김 종 화
주민번호	800226-1042820
운 전 자	김 종 욱
주 소	서울특별시 양재동 355-3번지
연 락 처	010-7466-0076

4. 사 고 사 항

구 분	내 용
사고일시	2013년 03월 06일 01:20분 경
사고장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265-20번지 인근
사고원인	도로 시설물의 보존상 결함
사고경위	<p>1) 피해차량 운전자 '김종욱'은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265-20번지 인근 도로 주행 중 빗물받이 맨홀에 차량 전륜 타이어가 접촉하면서 맨홀에 차량 전륜 탈락 및 차체가 노면에 충격하였음.</p> <p>2) 이후, 충격지점의 맨홀이 이탈한 상태를 확인한 운전자는 정비업체에서 차체 점검을 실시하고 성동구청으로 수리비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원을 제기함.</p>
사고확인내용	<p>- 현재 성동구청 치수방재과에서 사고구간의 복구 완료하였으며, 사고 당시 피해차량 운전자 '김종욱'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265-20번지 인근 도로 주행시 사고 발생 맨홀은 정상의 형태로 덮여 있었으나, 피해차량 전륜이 빗물받이 맨홀을 밟으면서 차량 전륜 탈락 및 차체와 노면과의 충격으로 하체 부품이 손상 된 사고로 확인됨</p>
원인검토	<p>- 사고 지점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바, 금번 사고는 피해 차량 운행 중 도로 빗물받이 맨홀 덮개를 밟으면서 발생한 물리적인 사고 형태를 고려할 때, 도로 시설물인 빗물받이 맨홀의 유지보수 상태의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됨.</p>

<p>최초 현장조사 손상확인</p>	<p>- 조사자 2013.03.08 접수 이후 즉시 현장 조사를 통한 피해차량 확인 결과 파손부품은 차량 하단부에 장착된 부품으로 점검장비(리프트) 없이 파손 부품 검수가 불가 하였으며, 피해자 제출 사진 등으로 확인 해 본 바, 하체 부품의 파손 상태가 확인되나, 본 건 사고 제반 사항 등을 토대로 부품 교환 타당성 검토해 볼 때, 직접 충격한 부품 외에 일부 하체 부품의 손상 상태가 본 건 사고에 연관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음.</p>
<p>견 적</p>	<p>- 피해차량 운전자는 사고 이후 2013.03.06 본 사고로 인해 하체 부품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며 부품 견적 산출하여 수리 진행을 요구하였고, (부품금액 : ₩56,718,310 / 예상공임 : 약 ₩30,000,000) 사고 당일(2013.03.06)부터 렌트차량(포르쉐)이용하였음.(예상 대차료: 약 ₩27,000,000원) (렌트차량 1일 이용료 : ₩900,000 / 추정 수리기간 : 30일) [추정손해액 ₩113,700,000]</p>
<p>진행사항</p>	<p>- 본 조사자 현장조사 이후 피해자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정비업체 및 중고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확인되어 피해차량 벤츠 S600 / 35마1481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보험경력 조회 결과 약 2억원의 보험금 수령 내역이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본 건 사고 고의성을 배재할 수 없고, 또한 고의가 아니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부품에 대해서 과다 보험금 청구가 예상되어 피보험자에게 방문 면담을 요청하였음.</p> <p>- 2013.03.19 오전 10:00 ~ 13:00 까지 당사 유상현 상무와 피보험자 '성동구청' 방문하여 치수방재과 담당자 '이이용'과 면담한 결과, 성동구청 측에서는 대물한도 50,000,000원을 한도로 피해차량 파손 부품에 대해서 보상처리를 요청 하였으며, 본 건 사고 제반 사항 및 인과관계를 볼 때, 피해자의 무리한 보상 요구 및 고의사고를 배재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국가배상 심의위원회 및 법원을 통해서 분쟁을 종식하는 것이 타당함을 약 3시간 가량 피보험자 담당 직원 치수방재과 '이이용' 및 '치수방재과장'에게 설명하고 이를 이해시켜 피보험자 측에서 보험사 진행 협조 및 소송 대응을 하겠다고 하였음.</p>

<p>진행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후, 피보험자측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사 접수하여 보상처리 불가하고 국가배상 심의위원회 또는 법원 민사 소송 접수를 통한 보상 처리를 유도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수급하지 못하고 소송 접수 하지 않을 것이며, 보험사에서 50,000,000원 한도 내에서 보상처리를 요구하였음. - 당사에서는 성동구청 담당자에게 구청 내부 규율상 고액의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심의위원회 및 법원 민사소송 판결로 손해배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라고 하였고, 피보험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안내하면서 소송을 유도하였음. - 이후, 피해자는 수리비는 국가배상으로 청구하겠으니, 렌트차량 대여 금액에 대해서라도, 보험금으로 지급해 달라며 요구하였고, 일정부분만 따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지 않음을 안내하였고, 이를 이해시켰음. - 피해자는 매일 수차례 전화 하며 보상처리 해주지 않을시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 하겠다고 보험사의 취약점을 들먹이며, 보상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피보험자 성동구청에서 소송처리하기로 결정되어 정확한 판결이 있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음.
<p>종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는 2013.06.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에게 금66,719,510원을 손해배상 하라는 민사소송 제기를 하였음.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33622) - 성동구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김형준 변호사'는 당사에서 진행했던 취지 대로 ①원고의 차량 소유 사실의 부존재, ②사고발생 사실의 부존재 내지는 인과관계의 부존재(소결론 : 청구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사실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 ③청구금액의 과다 (차량의 노후화된 연식, 사고 경력 7회, 중고대물가액 초과) 답변한 결과 피해자 측에서 소취하 동의하면서 본 건 사고 종국 되었음.

5.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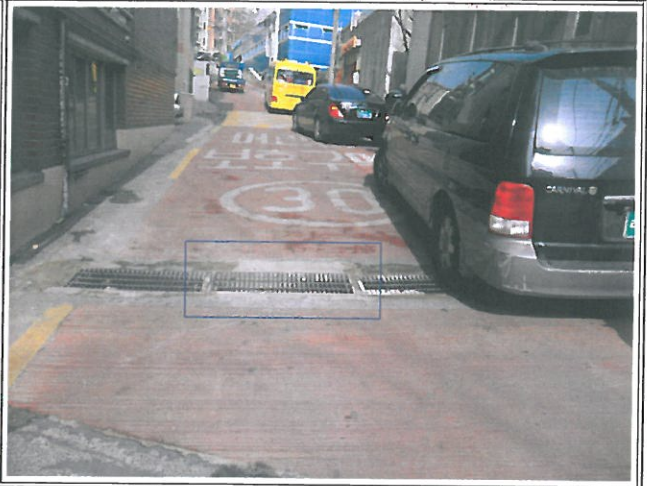
성동구청 공문	-----	1부
사건일반내용	-----	1부
사건진행내용	-----	1부
피보험자 사고경위서	-----	1부
피해차량 등록증	-----	1부
피해차량 손해내역서(공임, 렌트비용 제외)	-----	1부
변호사 답변서	-----	1부

본 보고서는 당사의 양식과 최선의 노력으로 이해 당사자의 어느
일방에도 편중됨이 없이 공정하게 작성되었음을 명백히 합니다.

사고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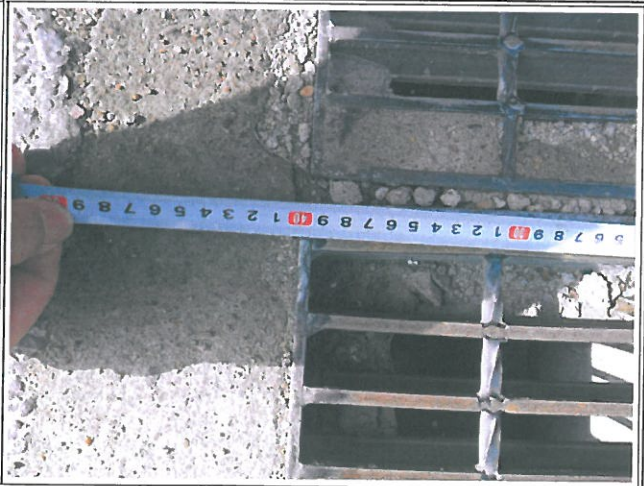
사고 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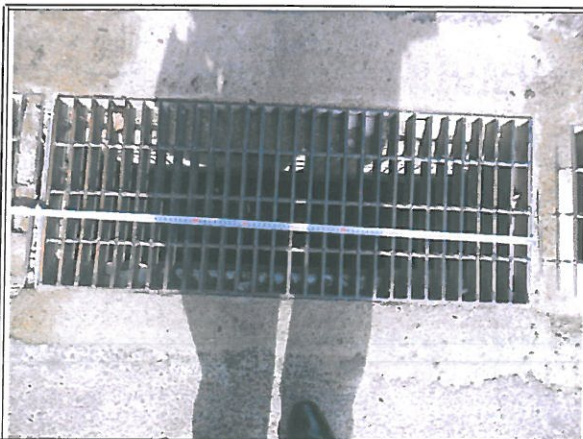
사고 지점 및 사고 발생 맨홀



빗물받이 맨홀 확인



빗물받이 맨홀 세로 40cm



빗물받이 맨홀 확인



빗물받이 맨홀 가로 100cm



빗물받이 맨홀 확인



빗물받이 맨홀 깊이 42cm



사고 발생 맨홀



사고 발생 맨홀 복구 확인



사고 발생 맨홀 복구 확인



사고 발생 맨홀 복구 확인



피해차량 35마1481 확인



피해차량 35마1481 확인



피해차량 35마1481 확인



피해차량 35마1481 확인



프론트 범퍼 및 멤바 손상



스페어 타이어 케이스 손상



프론트 범퍼 손상



머플러 손상



후륜 하체부품 손상



하체 부품 손상



배기 장치 손상



배기 장치 손상



하부 프레임 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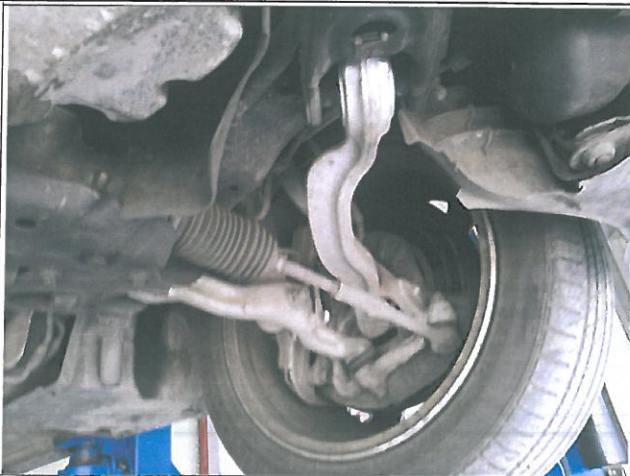
하부 프레임 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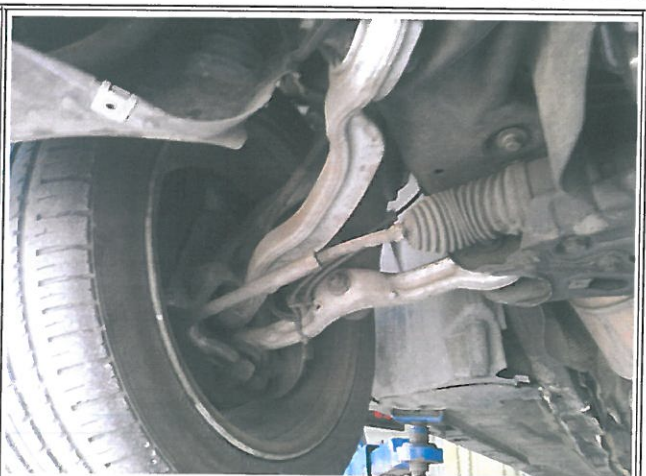
배기 장치 손상



배기 장치 손상



좌측 전륜 현가장치 손상



우측 전륜 현가장치 손상